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격 거리 미설정 지자체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지원>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8)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2.
3. 회 부 일 : 2025. 1.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의 보급 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3(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3월)’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임.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설비 용량 28,150MW, 2,293MW을 2038년까지 각각 77,203MW과 40,671MW로 확대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음.¹⁾

그러나,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100~1,000m 범위의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95%가 해당 규제를 도입함에 따라,²⁾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⁴⁾

일부 지자체는 최근 규제 완화나 예외조건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도 존재함.⁵⁾ 당초 이격거리 규제는 주민 수용성, 경관, 환경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재생에너지의 추가 보급 및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

1)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전망 (단위: MW, 정격용량 기준)>

연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연료전지	IGC	합계
2024	28,150	2,293	1,909	256	1,852	1,148	346	35,954
2032	61,739	24,868	1,909	256	1,852	2,821	346	93,791
2038	77,203	40,671	1,909	256	1,852	3,621	346	125,858

출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공고('25.3.)

2)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228개(세종 및 제주 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9개(57%)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고,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은 129개, 풍력은 5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음.

3) '이격거리 규제에 발목 잡힌 태양광 확산, 여의도의 3000배 면적 잃었다.'(인더스트리 뉴스, 2025.3.21.)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제도화'의 필요성'(국토일보, 2025.3.21.)

4)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잠재입지면적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역에서 규제전(2015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였음('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79호, 2024.12.9.)

5) 재생에너지 '대못' 뻘다...6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축소 추진(전기신문, 2024.8.13. 김진후 기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370>

로 보임.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지방자치단체 현황('25.7월)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규제중 지자체 수 (전체 지자체 수)	17 (18)	11 (31)	15 (18)	20 (22)	0 (5)	2 (9)	0 (5)	0 (16)	0 (25)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체
	0 (1)	0 (5)	1 (10)	22 (22)	14 (14)	1 (1)	15 (15)	11 (11)	129 (22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자체에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⁶⁾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규제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이에, 개정안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이격거리 규제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규제 철폐·완화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음.

사업	내용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부여	이격거리 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REC 가중치 0.1 ~ 0.2까지 범위 부여 ※ 이격거리 미준수시 0.08~0.16 vs 준수시 0.1~0.2 (+0.02~0.04)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시, 이격거리 규제(정량 평가, 0~3점) 가점 평가하여 최대 3점 부여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 중 ‘수용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평가(15점)에 반영

7)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의 주요 쟁점 및 규제개선 방안」(한국행정연구원, KIPA ISSUE PAPER 통권 제143호, 2024.11.) p.5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규제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민수용성 저하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만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⁸⁾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격거리 설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00724호,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농촌 경관 훼손 및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468

8)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연천군, 충북 제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남 무안군, 경남 고성군, 전국농민회총동맹(장흥군농민회, 영암군 농민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